



제 419 회 국 회 (임 시 회)
제1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토종가축 인정제도 근거 규정 등〉

■ 이원택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4962호)

2024. 1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최용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3
1. 가축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신청 의무 규정(안 제7조제2항 신설) ·	3
2. 검정기관 지정 근거 이관 및 검정기관 지정취소·영업정지 처분 근거 신설 (안 제7조의2 신설) ·····	8
3. 토종 가축 인정제도 실시 근거 규정(안 제2조 및 안 제9조의2 신설) ···	14
4. 토종가축 인정기관 지정 근거 등 마련(안 제9조의3 신설) ·····	25
5.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범위에 자동차 등 이동수단 포함 (안 제17조제1항) ·····	31
6.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 인증제도 폐지를 위한 관련 조문 삭제 (안 제21조 삭제) ·····	38
7. 보고 및 검사 등 근거 신설(안 제49조의2 신설) ·····	44
8. 안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 신설(안 제50조 신설) ·····	51
9.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신설(안 제56조제2항제19호 신설) ·····	55
10. 부칙 ·····	58

I. 제안경위

가. 제 안 자 : 이원택의원 등 10인

나. 제 안 일 : 2024. 10. 28.

다. 회 부 일 : 2024. 10. 29.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현행법은 토종가축을 한우·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 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닌 것으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된 품종의 가축으로 정의하고 있음. 한편, 토종가축의 인정 신청 및 취소,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취소 등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음.

그런데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은 인정받은 내용을 광고하거나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므로 인정 및 취소 등 내용을 법률에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의 경우에는 최소한의 기준을 법률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나 고시로 운영되고 있어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토종가축 인정 및 인정 취소와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청문 절차 등을 법률에 규정하고,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 제도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축산업의 안정적인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농림축산식품부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등 관련 사항을 법률로 상향하면서 “토종가축” 정의 규정을 보완하고, 토종가축 인정 업무에 관한 근거 및 인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마련함(안 제2조, 제9조의2 신설, 제50조).
- 나. 가축의 검정 신청 절차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고, 검정기관 지정에 관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면서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규정 마련함(안 제7조, 제7조의2 신설).
- 다. 수요가 적은 우수종축업체 인증제 폐지를 위해 근거 규정을 삭제함(제21조 삭제).
- 라. 행정기관의 정책 결정 또는 직무 수행에 필요한 출입, 보고, 검사, 자료제출 및 진술요구 등의 근거를 마련함(안 제49조의2 신설).

Ⅲ. 검토의견

1. 가축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신청 의무 규정(안 제7조제2항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가축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검정 신청 의무를 규정하고, 현행법 제7조의 가축 검정기관 지정과 관련한 사항을 별도 조문으로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7조(가축의 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u>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u>	제7조(가축의 검정) ① ----- ----- ----- <u>--다음-----가축에 대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다.</u>
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1.·2. (현행과 같음)
<u><신 설></u>	② <u>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u>
② <u>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③ ----- <u>검정의 종류·기준, 제2항에 따른 검정의 신청절차 및 그 밖에 검정의 실시</u> ----- -----.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의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검정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규정의 근거를 별도 조문으로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한돈·양계·오리 등 9개 단체 별도 의견 없음.

다. 검토의견

가축 검정제도는 ①한우, ②젓소, ③육우¹⁾, ④돼지, ⑤닭, ⑥오리를 대상으로 가축개량을 위해 측정가능한 형질을 조사하여 유전적으로 능력이 우수한 종축을 선발하려는 목적으로 「축산법」 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1조²⁾에 따라 2014년 12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1)

구분	소의 종류
한우	종축등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한우기준에 부합하는 소
젓소	착유하고 있거나 착유를 위하여 사육중인 소, 젓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소
육우	젓소 중 착유한 경험이 없는 암소, 젓소 암소 중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소, 젓소수소, 그 밖의 식용 소
수입소	동물검역관이 수입소로 인정하는 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제출(2024. 11. 26.)

2) 「축산법」

제7조(가축의 검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다음 각 호의 가축을 검정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2.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을 생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육하는 가축

② 제1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기준과 지정 절차, 검정의 신청절차, 검정의 종류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11조(가축의 검정) ① 법 제7조제1항제2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씨알”이란 종계·종오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종축 중 같은 계통의 씨암탉과 씨수탉, 씨암오리와 씨숫오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생산된 알을 말한다.

육우의 경우 과거에 외국의 육우 품종인 심멘탈, 샤롤레, 앵거스 등을 도입하여 한우와의 교잡을 통한 육량 및 체형개선 등 개량관련 연구가 진행되었을 때에 국립축산과학원을 육우 종축검정기관으로 지정하였으나, 정부 정책이 순수 한우를 개량하는 방향으로 전환³⁾되면서 그 이후로는 연구가 더 이상 진행되지 않아 별도의 검정 기준 및 실적이 없음.

【 가축검정제도 개요 】

□ 검정기관

축종	지정된 종축검정기관	비고
한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경제지주회사 가축개량원, (사)한국종축개량협회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국가사업으로 검정을 수행 *국립축산과학원: 유전능력평가·씨수소선발 *농협 가축개량원: 당대후대검정
젖소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농협경제지주회사 가축개량원, (사)한국종축개량협회	*도축산관련연구기관: 당대검정(한우만) *한국종축개량협회: 검정과정 중 외모평가
육우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검정 실적 없음
돼지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사)대한한돈협회, (사)한국종축개량협회	□기관별로 역할을 분담하여 농장 검정을 수행 *국립축산과학원: 유전능력평가·씨수소선발 *대한한돈협회, 한국종축개량협회: 농장 검정 ※돼지의 경우 농장에 출장하여 검정
닭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사)대한양계협회	□국립축산과학원 및 도축산관련연구기관은 보유 축에 대한 검정 수행
오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 도 축산관련연구기관, (사)한국오리협회	□대한양계협회 및 한국오리협회는 농장 검정 수행

② 법 제7조에 따른 가축의 검정은 서류심사 및 외모를 확인하기 위한 일반검정(종계·종오리만 해당한다)과 가축의 자질 및 경제성을 확인·평가하기 위한 능력검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검정기관(이하 "종축검정기관"이라 한다)에 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정신청을 받은 종축검정기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검정 대상 가축별로 검정의 종류·기간·방법 및 조사사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검정기준에 따라 검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가축의 검정신청절차, 그 밖의 검정에 필요한 사항은 종축검정기관이 관련 기관, 학계 및 업계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한 후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3) 1993년 '가축개량종합대책'을 통해 한우개량목표를 통하여 한우는 "순수개량"으로 방향 결정

□ **주요기준**

구분	주요 검정 형질
한우	체중, 체척, 도체중, 근내지방도, 등심단면적, 등지방두께
젖소	유량, 유지방, 유단백, 체세포, 선형(외모)심사결과
육우	검정기준 고시된 바 없음
돼지	산자수, 체중, 105kg 도달일령, 등지방두께, 등심단면적, 정육률
닭	산란수, 난중, 육추율, 체중 등
오리	산란수, 육성률, 육추율, 체중 등

□ **축종별 종축 등록 및 검정 현황**(²³)

구분	한우	젖소	육우	돼지	닭	오리
등록	1,047,713	58,452	-	411,110	-	-
검정	1,778	1,333	-	76,158	4,158,159	258,748
선발	114	26	-	20	-	-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제출(2024. 11. 26.)

‘가축검정’은 가축에 있어 능력검정(Performance test)을 말하며, 종축 선발을 위해 대상 가축의 경제적 가치를 판단할 수 있는 측정 또는 평가 가능한 생물학적 특성(체중, 근내지방도⁴⁾, 유량⁵⁾, 산자수⁶⁾ 등 형질)에 대해 조사·평가하는 것을 말함.

현행법 제7조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하여금 가축의 능력 개량 정도를 확인·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 중에서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동법 제6조에 따라 등록한 가축 등에 대한 검정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가축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가축검정 신청 의무와

4) 근육내지방 분포도(일명 마블링)

5) 젖소 마리당 산유량

6) 돼지에서 모돈 마리당 새끼수

관련하여 현행 법률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상태임.

이에 개정안은 가축의 검정을 받으려는 자에 대한 가축검정 신청 의무를 규정하려는 것으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볼 때, 입법 미비를 개선하려는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유사 입법례 】

「종자산업법」
제42조의2(종자의 검정) ② 제1항에 따른 <u>검정을 받으려는 자</u> 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u>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u>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4(전통재료 인증) ② <u>인증을 받으려는 자</u> 는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유산청장에게 <u>신청하여야 한다</u>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22조(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인증 등) ③ 제2항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의 <u>인증을 받으려는 자</u> 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u>인증을 신청하여야 한다</u> .

2. 검정기관 지정 근거 이관 및 검정기관 지정취소·영업정지 처분 근거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개정안은 현행법 제7조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근거를 안 제7조의 2호로 이관하고,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등의 처분근거를 신설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를 갖춘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제7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u> ② <u>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검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조치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검정업무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1. <u>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u> 2. <u>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3. <u>제7조제3항에 따른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수행한 경우</u> ③ <u>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검정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그 밖에 검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의 검정기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검정기관의 지정 및 사후관리 규정의 근거를 별도 조문으로 마련하려는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함.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한돈·양계·오리 등 9개 단체
별도 의견 없음.

다. 검토의견

현행법은 가축의 검정기관 지정과 관련한 세부적인 규정이 없는데, 개정안은 이러한 입법 미비를 개선하려는 것임.

유사 입법례에서 ‘검정기관 등의 지정’과 관련하여 별도 조문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검정기관의 지정과 관련된 사항을 신설함으로써 입법 미비를 해소하려는 안 제7조의2제1항은 타당한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제98조에 따른 검정을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검정 및 재검정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사료관리법
제22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수거한 사료의 검정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을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또한, 현행법 및 하위법령상 가축의 검정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시정조치 및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가 부재하여 안 제7조의2 각 호와 같이 검정기준을 위반하여 검정업무를 수행하는 등의 경우에도 검정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처분을 할 수 없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검정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시정조치 및 영업정지 처분의 근거 및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가축 검정제도와 관련한 입법미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 일부 수정이 필요해 보임.

첫째, 안 제7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가축 검정”의 실시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데, 개정안은 가축 검정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별도의 검정기관을 지정하여 가축 검정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검정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별도의 검정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검정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그 지정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7조의2제1항의 검정기관 지정 근거 마련 시 ‘검정업무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목적을 보다 명확히 규정⁷⁾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유사 입법례 】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검정 및 재검정 업무를 전문적·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검정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제28조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를 검정기관으로 지정해서는 아니 된다.
사료관리법
제22조(사료검정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21조에 따라 수거한 사료의 검정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모두 갖춘 기관을 사료검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1. 사료의 일반 조성분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2. 사료의 현미경검사를 할 수 있는 시설 3. 유해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4. 열량·아미노산·비타민 및 광물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5. 미생물·유해독소와 사료로서 부적합한 것의 혼합 여부를 검정 또는 감별할 수 있는 시설 6. 유기산·효소 등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7. 잔류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분석할 수 있는 시설
낙시 관리 및 육성법
제45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8조에 따른 낙시도구의 유해물질 허용기준 적합 여부와 제40조에 따른 미끼기준 적합 여부를 검정(이하 "검정"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를 갖춘 기관을 검정기관(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7조에 따른 검정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시설 및 장비 등 기준을 갖춘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이하 “검정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안 제9조의3제2항제4호에서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사유로 “그 밖에 인정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인정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안 제7조의2제2항 검정기관의 지정취소 및 영업정지 처분 등의 사유에도 “그 밖에 검정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검정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를 추가할 필요가 있어 보임.

셋째, 검정기관의 지정취소와 관련하여 지정취소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정된 검정기관이 보다 책임감 있게 검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정행위 등으로 검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검정기관으로 재지정 될 수 없도록 추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③ 제1항에 따라 <u>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u> .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제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u>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u> .

넷째, 개정안에서는 ① 가축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검정기관 지정 신청 의무, ② 가축 검정기관 지정 후 중요사항 변경 시 이에 대한 변경신고와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음.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소관 부처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가축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한편,

가축 검정기관 지정 후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추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 유사 입법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9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② <u>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검정에 필요한 인력과 시설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검정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u>
「농업기계화촉진법」
제12조의3(검정대행기관의 지정) ② <u>제1항에 따라 검정대행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
「계량에 관한 법률」
제26조(검정기관의 지정 등) ② <u>제1항에 따라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u> 1. 비영리 법인 또는 단체일 것 2. 검정요원, 검정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추 것 3.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지 아니하는 등 독립성을 갖추 것 4. 계량기와 관련된 분야에서 「국가표준기본법」 제23조에 따라 검사기관으로 인정을 받을 것

3. 토종 가축 인정제도 실시 근거 규정(안 제2조 및 안 제9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현행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제도”의 실시 근거를 현행법에 상향 규정하고,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⁸⁾(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48호)에 따른 상기 인정제도의 인정기준, 절차 등은 동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도록 현행법에 위임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등 인정 취소 사유 발생 시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가축”이란 사육하는 소·말·면양·염소[유산양(乳山羊: 젖을 생산하기 위해 사육하는 염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돼지·사슴·닭·오리·거위·칠면조·메추리·타조·펭, 그 밖에 대통령령	제2조(정의) ----- -----. 1. (현행과 같음)

8)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인정기관) ① 토종가축별 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토종돼지 :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2. 토종닭 :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3. 토종오리 :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4. 토종말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5. 토종벌 : 사단법인 한국한봉협회

② 토종가축의 인정기관은 인정대상 토종가축별로 1개의 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다만, 관련이 있는 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한 곳으로 일원화한다.

현행	개정안
으로 정하는 동물(動物) 등을 말한다. 1의2. “토종가축”이란 제1호의 가축 중 한우, 토종닭 등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 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것으로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u> 인정된 품종의 가축을 말한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3. “축산물”이란 가축에서 생산된 고기·젖·알·꿀과 이들의 가공품·원피[가공 전의 가축을 말하며, 원모피(原毛皮)를 포함한다]·원모, 뼈·뿔·내장 등 가축의 부산물, 로얄제리·화분·봉독·프로폴리스·밀랍 및 수벌의 번데기를 말한다. 4. “축산업”이란 종축업·부화업·정액등처리업 및 가축사육업을 말한다. 5. “종축업”이란 종축을 사육하고, 그 종축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6. “부화업”이란 닭, 오리 또는 메추리의 알을 인공부화 시설로 부화시켜 판매(다른 사람에게 사육을 위탁하는 것을 포함한다)하는 업을 말한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8. “가축사육업”이란 판매할 목적으로 가축을 사육하거나 젖·알·꿀을 생산하는 업을 말한다. 8의2. “축사”란 가축을 사육하기 위한 우사·돈사·계사 등의 시설과 그 부속시설	1의2. ----- -----토종닭 등 농림축산 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가축으로서 ----- ----- -----제9조의2 ----- -----. 2. ~ 10의2. (현행과 같음)

현행	개정안
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9. “가축거래상인”이란 소·돼지·닭·오리·염소,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축을 구매하거나 그 가축의 거래를 위탁받아 제3자에게 알선·판매 또는 양도하는 행위(이하 “가축거래”라 한다)를 업(業)으로 하는 자로서 제34조의2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0. “국가축산클러스터”란 국가가 축산농가·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는 기업·연구소·대학 및 지원시설을 일정 지역에 집중시켜 상호연계를 통한 상승효과를 만들어 내기 위하여 형성한 집합체를 말한다. 10의2. “축산환경”이란 축산업으로 인해 사람과 가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나 상태를 말한다. <신 설>	제9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의 보존 및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가축의 종류 및 외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가축을 토종가축으로 인정할 수 있다. ② 사육하고 있는 가축을 제1항에 따라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을 신청하여야 한다.</u> ③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자 및 토종가축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축산물을 가공,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하는 자는 <u>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을 받은 사</u>

현행	개정안
	<u>실을 표시할 수 있다.</u> <u>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토종가축의 인정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u> <u>2.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u>⑤ 그 밖에 토종가축의 인정 절차 및 취소, 표시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14년부터 실시해 온 토종가축 인정제도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그 실시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현재 부령 및 고시에 따라 실시 중인 인정 업무 및 인정 축산물의 표시 등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는 개정안에 동의함.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한돈·양계·오리 등 9개 단체 별도 의견 없음.

다. 검토의견

“토종가축 인정제도”는 ①한우, ②돼지, ③닭, ④오리, ⑤말 및 ⑥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⁹⁾을 대상으로 2014년 1월부터 운영되고 있음.

토종가축에 대하여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¹⁰⁾(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48호) 제5조에 따른 인정기관이 토종가축으로 인정하는 경우 그 사실을 해당 가축 사육 농가가 표시 또는 광고할 수 있음.

【 토종가축 인정제도 마크 】



9) 「축산법 시행규칙」

제2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 ① 「축산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토종가축은 한우, 돼지, 닭, 오리, 말 및 꿀벌 중 예로부터 우리나라 고유의 유전특성과 순수혈통을 유지하며 사육되어 외래종과 분명히 구분되는 특징을 지니는 가축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절차, 그 밖에 인정업무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0)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인정기관) ① 토종가축별 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토종돼지 :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2. 토종닭 :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3. 토종오리 :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4. 토종말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5. 토종벌 : 사단법인 한국한봉협회

② 토종가축의 인정기관은 인정대상 토종가축별로 1개의 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다만, 관련이 있는 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한 곳으로 일원화한다.

【 토종가축 인정제도 개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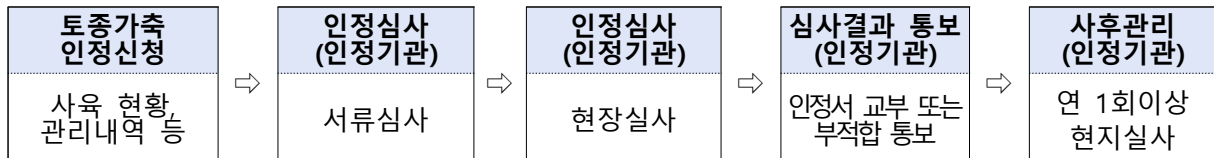
□ 토종가축 인정대상 및 인정기관 : 6개 축종, 5개 기관(고시 제3조, 제5조)

대상	한우·토종돼지	토종닭	토종오리	토종말	토종별
기관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제주도 축산진흥원	(사)한국한봉협회

□ 주요 인정기준(고시 제3조, 별표1)

○ 축종별 외모(색깔, 체형, 뿔, 벚, 부리 등), 체중 및 체장 등 기준에 부합

□ 인정절차(고시 제8조~제10조, 제12조)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제출(2024. 11. 26.)

‘14년 제도 도입 당시부터 현행 토종가축 인정대상인 6개 대상 가축(한우, 토종돼지, 토종닭, 토종오리, 토종말, 토종별)을 대상으로 인정제도를 시행하여 ‘23년까지 약 13.7만 농가, 약 700만 마리, 약 3.6천군이 인정되었음.

【 토종가축 인정현황(‘14~‘23) 】

(단위: 가구, 마리)

축종	고시상 인정된 토종가축(A)			종축등록기관에 등록된 가축(토종가축)(B)			계(A+B)	
	인정농가수	사육규모	인정연도	등록농가수	사육규모	등록연도	농가수	사육규모
한우	4,480	6,131	‘16~‘23	125,545	6,883,259	‘16~‘23	130,025	6,889,390
토종돼지(재래돼지)	1	100	‘19	4	2,066	‘16~‘23	5	2,166
토종닭	5	29,333	‘15~‘20	-	-	-	5	29,333
토종오리	1	8,000	‘20	-	-	-	1	8,000
토종말(제주마)	-	-	-	630	3,928	‘16~‘23	630	3,928
토종별(1군 2만마리 수준)	108	3,654군	‘16~‘23	-	-	-	108	3,654
계	4,595	43,564마리/ 3,654군	-	126,179	6,889,253	-	130,774	6,932,817마리/ 3,654군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제출(2024. 11. 26.)

현행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서는 “토종가축”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 시행중인 “토종가축 인정제도”의 실시 근거 및 인정 기준·절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함.

【 토종가축 인정제도 인정기준 】

구분	내용	인정기준	비고
한우	일반한우	□ 품종별 부위별 외모 및 체형 세부기준* 충족 시 *모색, 체형, 뿔, 비경(코), 머리·목, 전구, 중구, 엉덩이, 넓적다리, 유기, 지제·발굽	종축등록기관에서 등록된 경우 토종가축으로 인정
	제주흑우		
	최소		
토종돼지	재래종	□ 부위별 외모 특징* 등 충족 시, 단 실격조건**이 있는 경우 제외 *(재래종) 모색, 머리, 귀, 복부, 둔부, (개량재래종) 모색, 복부, 둔부 **몸색 및 털색, 코, 귀, 유두 등의 이상이 있는 경우, 등록기관의 혈통기록에서 재래종 후대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등	
	개량재래종		
토종닭	재래종	□ 외모 심사 항목별*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체중, 균형 및 상태, 볏, 고기수염 모양, 부리·머리·눈·귀·뿔·목·날개·등·꼬리·몸통·가슴·다리와 발가락 모양 및 색깔	적갈색종, 황갈색종, 흑색종, 백색종, 회색종 등
	육량토착종		황색계, 흑색계, 백색계 등
	육질토착종		갈색계, 백색계, 황반계 등
토종오리		□ 외모 심사 항목별* 심사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체중, 균형 및 상태, 부리·머리·눈·목·날개·등·꼬리·몸통·가슴·다리와 발가락 모양 및 색깔	
토종말		□ 외모기준*, 체형기준**을 충족 시, 단 실격조건***이 있는 경우 제외 *일반외모, 체형, 체격, 품위, 자질, 성징, 머리, 목, 전·중구, 어깨 등, 배, 허리, 후구, 엉덩이, 꼬리, 유기, 생식기, 지제, 보양 **체고, 배고, 고고, 흉위, 흉심, 흉폭, 요폭, 고폭, 체장, 두장, 전관위, 고장에 대한 체고 대비 비율 ***유전적 불량형질(등요병, 백내장, 앵무새입증, 천명증, 단고환, 잠복고환) 등	종축등록기관에서 등록된 경우 토종가축으로 인정
토종별		□ 외모기준* 충족 시 *몸체 색, 뒷날개 시맥 모양, 허길이, 체형, 머리방향	

※ 자료: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11)(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48호) 별표 1 발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제출(2024. 11. 26.)

11)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5조(인정기관) ① 토종가축별 인정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우·토종돼지 : 사단법인 한국종축개량협회
2. 토종닭 : 사단법인 한국토종닭협회
3. 토종오리 : 사단법인 한국오리협회
4. 토종말 : 제주특별자치도 축산진흥원
5. 토종별 : 사단법인 한국한봉협회

② 토종가축의 인정기관은 인정대상 토종가축별로 1개의 기관을 지정 운영한다. 다만, 관련이 있는 기관이 복수인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한 곳으로 일원화한다.

이와 관련하여 현행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고시)을 살펴보면,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으로 하여금 인정받은 내용을 광고하거나 표시할 수 있도록 규정¹²⁾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등 인정 취소 사유 발생 시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¹³⁾하고 있음.

따라서,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사실에 대한 표시·광고의 경우 국민의 권리에 관한 사항이고, 취소의 경우 그 권리를 박탈하는 침익적 행정처분인 점을 고려할 때, “토종가축 인정제도”의 실시 근거 및 인정취소 사유 등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12)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1조(인정 농장 및 축산물의 표시) ①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을 사육하는 농장은 인정받은 내용을 기재한 표지판을 부착하거나, 인정받은 내용을 사실대로 광고할 수 있다.

② 토종가축으로 인정받은 가축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인정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으며, 인정 표시 및 세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13)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인정의 취소 등) ① 인정기관은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3조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현지실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
4. 제11조 제2항에 따른 보완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인정기관은 인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내용을 당초 인정을 받은 자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6조에 따른 인정기관의 조건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11조에 따른 지도감독에 필요한 확인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4조에 따른 보고 또는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는 경우 취소내용을 해당 인정기관에 문서로 통보하고 그 내용을 고시에 반영하여야 한다.

인정 기준·절차 등에 대한 위임근거를 법률에 명확히 마련하려는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현행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 제14조에서는 개정안에서 인정의 취소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안 제9조의2제4항제1호·제2호 외에도,

① 지도감독에 필요한 확인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② 보고 또는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③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추가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인정의 취소사유에 ① ~ ③을 추가로 규정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수정의견 】

비 고	개정안 제9조의2제4항	수정의견
토종가축 인정 취소사유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인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지도감독에 필요한 확인 또는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보고 또는 비치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 시정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한편, “인정제도”는 “인증제도”와 같이 객관적 증명력을 부여함으로써 해당 제품 등의 품질을 보증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고, 지위나 자격 등을 단순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고 있음.

따라서, 각 품종의 부위별 외모 및 체형에 대한 일정기준 충족 시 토종가축의 자격을 확인해주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토종가축 인정제도”는 인정제도의 본래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임.

【 인정 및 인정제도 비교 】

구분	인증제도	인정제도
목적	정부, 공공기관 등이 제품·서비스의 성능 등이 일정한 기준에 부합한다는 것을 확인하여 품질 등을 공식적으로 증명 및 보증	정부, 공공기관 등이 공로의 인정, 지위·자격 등 특정한 사실관계를 공적으로 단순 확인
사례	유기식품등의 인증, 무농약농산물·무농약 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의 인증(「친환경농어업법」), 녹색건축 인증,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난민 인정(「난민법」), 순환자원 인정(「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

※ 자료: 법제기준과 실제(국회사무처 법제실 p354)

한편, 안 제9조의2제3항¹⁴⁾에서 포장에 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소분 및 재포장을 포장에 포함하여 규정하는 것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토종닭의 경우 도축장에서 벌크포장(약 20~50마리 대포장)된 것을 유통업체가 유통·소비에 용이하도록 1마리 단위로 재포장하고 있음.

또한, 계란의 경우 30개 판란¹⁵⁾을 5개, 10개, 15개 단위 등의 소포장 제품으로 다시 포장하는 등 재포장이 유통단계에서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따라서, 소분 및 재포장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이러한 유통단계에서의 소분·재포장 시 토종가축 인정을 표시할 수 없는 것으로 인지하여 혼란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

따라서, 안 제9조의2제3항에서 포장에 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하도록 규정한 것은 타당한 조치로 보임.¹⁶⁾

14) 제9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③ 토종가축을 사육하는 자 및 토종가축에서 축산물을 생산하거나 해당 축산물을 가공,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15) 계란의 도·소매 유통을 위해 품질과 중량에 따라 30개를 담을 수 있는 난좌(계란판)에 계란을 담고 계란이 외부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덮개와 끈을 이용하여 포장한 것

16) 【유사업법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취급”이란 농수산물, 식품, 비식용가공품 또는 농어업용자재를 저장, 포장[소분(小分)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운송, 수입 또는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4. 토종가축 인정기관 지정 근거 등 마련(안 제9조의3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안 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토종가축 인정제도”와 관련하여 인정제도를 운영할 인정기관의 지정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인정기관의 지정취소, 시정조치 및 영업정지 처분 근거 및 사유 등을 규정하려는 내용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력, 조직, 시설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춘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를 제9조의2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하 “인정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인정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거나 시정조치 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인정업무를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인정 기준을 위반하여 인정업무를 수행한 경우 4. 그 밖에 인정업무를 부실하게 수행하는 등 인정기관으로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정기관 지정 및 지정 취소의 기준·절차, 그 밖에 인정기관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토종가축 인정업무가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인정기관의 지정 근거 및 사후관리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한돈·양계·오리 등 9개 단체 별도 의견 없음.

다. 검토의견

“토종가축 인정제도”의 기준·절차 등에 대하여 현행법상 규정하고 있지 않고,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농림축산식품부 고시 제2024-48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또한, 인정기관 지정 근거, 인정기관 지정취소, 업무정지 처분 등도 현행법이 아닌 「토종가축의 인정기준 및 절차 등」에서 규정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제도를 운영할 인정기관의 지정 근거, 인정기관 지정 취소, 영업 정지 처분 근거 등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련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토종가축 인정제도와 관련한 입법 미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조치로 보임.

다만, 유사 입법례를 살펴볼 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첫째, 안 제9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와 같이 “토종가축 인정”의 실시 주체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인데, 개정안은 토종가축 인정 업무에 전문성이 있는 별도의 인정기관을 지정하여 토종가축 인정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려는 것임.

【 현행 토종가축 인정대상 및 인정기관 】

<6개 축종, 5개 기관(고시 제3조, 제5조)>

대상	한우.토종돼지	토종닭	토종오리	토종말	토종벌
기관	(사)한국종축개량협회	(사)한국토종닭협회	(사)한국오리협회	제주도 축산진흥원	(사)한국한봉협회

인증업무의 전문성을 위하여 별도의 인증기관을 지정하도록 규정한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인증기관의 지정과 관련하여 그 지정 이유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안 제9조의3제1항의 인정기관 지정 근거 마련 시 ‘인증업무의 효율적 수행’이라는 목적을 보다 명확히 규정¹⁷⁾할 필요가 있어 보임.

17)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인력, 조직, 시설 등 기준을 갖춘 축산 관련 기관 및 단체(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하여 인증업무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 유사 입법례 】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의4(청정수소인증기관의 지정 등)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u>제25조의2제1항 및 제7항에 따른 인증 및 점검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에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수소사업 관련 기관·단체 또는 법인을 청정수소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u>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한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에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이하 "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위하여 교통수단·여객시설 및 도로를 계획 또는 정비한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대하여 인증을 할 수 있다. ③~④: (생략)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u>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u>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34조(신뢰성인증기관의 지정) ① 정부는 <u>소재·부품·장비의 신뢰성 향상을 위하여 신뢰성 인증을 실시하는 기관(이하 "신뢰성인증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u>

둘째, 개정안에서는 ① 토종가축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의 인정기관 지정 신청 의무, ② 토종가축 인정기관 지정 후 중요사항 변경 시 이에 대한 변경신고와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지 않음.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가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소관 부처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하고,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규

정하고 있는바,

토종가축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필요한 시설 등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도록 규정하는 한편,

토종가축 인정기관 지정 후 중요사항 변경 시 변경신고를 하도록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② <u>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u> 다만,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3조(품질인증기관의 지정 등) ② <u>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하며,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그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u> 다만, 제24조에 따라 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다시 지정 신청을 할 수 없다.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6조(인증기관의 지정 등) ② <u>제1항에 따라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u> ⑤ <u>인증기관은 지정받은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u>

셋째, 개정안은 인정기관 지정취소 시 일정기간 동안 재지정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음.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부정행위 등으로 인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 동안 인정기관으로 재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인정기관 지정취소 처분의 실효성을 높이고, 지정된 인정기관이 보다 책임감 있게 인정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인정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일정기간(2년 또는 3년) 동안 인정기관으로 재지정될 수 없도록 규정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유사 입법례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③ 제1항에 따라 <u>인증기관의 지정이 취소된 자는 취소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하면 다시 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을 수 없다.</u> 다만,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지정이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9조(우수관리인증기관의 지정 등) ②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하여야 하며, 우수관리인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 변경되었을 때에는 변경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10조에 따라 우수관리인증기관 지정이 취소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을 할 수 없다.

5.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범위에 자동차 등 이동수단 포함
(안 제17조제1항)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가축 인공수정소의 범위에 고정 사업장이 아닌,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포함하려는 내용임. 인공수정소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개설하는 곳을 말함.

현행	개정안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u>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이하 “수정소”라 한다]</u> 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7조(수정소의 개설신고 등) ① - ----- ----- ----- <u>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포함한다. 이하 “수정소”라 한다]</u> ----- ----- <u>갖추어 수정소의 소재지(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수정소를 개설하려는 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소재지로 한다)를 관할하는</u> -----.
②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② ~ ④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 따른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수정소의 개설을 신고한	

현행	개정안
자(이하 “수정소개설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영업을 휴업한 경우 2. 영업을 폐업한 경우 3.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경우 4. 신고사항 중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인공수정소는 고정사업장에서의 영업 외에 필요한 장비 등을 차로 운반하여 영업을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여 ‘수정소’의 의미에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한돈·양계·오리 등 9개 단체
별도 의견 없음.

3)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¹⁸⁾

현재 가축인공수정 업무가 차량에 냉동질소 정액보관고를 탑재하여 농가에 출장, 현장에서 인공수정하는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

18) 설립일자: 1991. 1. 15

설립근거: 민법 제32조

설립목적: 본회 회원 상호간 상부상조함으로써 협동조직을 강화하여 회원의 권익옹호와 사회적 지위를 향상시키는 물론 가축 개량증식사업을 통하여 축산발전에 기여함

조직: 12개 지부

회원 수: 656명(인공수정사 면허를 소지한 개업수정사)

므로, 별도의 사업장을 미설치한 경우 인공수정소의 소재지를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로 개선하는 것에 동의함.

다. 검토의견

현행법 제17조제1항에서는 정액 또는 수정란을 암가축에 주입 또는 이식하는 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가축 인공수정소[(家畜 人工授精所), 이하 “인공수정소”라 한다]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제1항에 따른 인공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에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1항 및 제2항에서는 인공수정소의 개설신고를 하려는 자로 하여금 ①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②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를 득한 자를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상기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로는 정액 주입기·액체질소보관통·정액 용해기·현미경, 정액 주입용기 및 방역물품 등이 있음.

【 인공수정소 개설 필요 기구·설비 】

- (장비) 정액 주입기, 액체질소보관통, 정액 융해기, 현미경
- (소모품) 정액 주입용기(시스(sheaths), 슬리브 등), 방역물품(방역복, 장갑 등) 등

		
영업차량 내부 사진1	영업차량 내부 사진2	방역물품(방역복, 마스크, 덧신, 장갑 등)
		
액체질소보관통 (냉동 정액 straw 보관)	정액 주입기 (가축 질내 삽입하여 정액 주입)	정액 주입용기(시스) (정액 주입기에 넣는 일회용 소모품)
		
정액 검사 현미경 (정액 성상 등 검사)	정액 융해기 (항온수조로 냉동정액을 적정온도로 융해)	정액 주입용기(슬리브) (전염병 예방 목적의 주입기 외부 덮개로 일회용 소모품)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제출(2024. 11. 26.)

또한, 상기 기구 및 설비를 자동차에 적재한 뒤, 인공수정을 원하는 축산농가에 방문하여 인공수정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음.

그런데,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 현행법상 “인공수정소”의 개념을 ‘장소적’ 의미로 국한하여 해석함.

그 결과 ①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 ② 수정사 또는 수의사의 면허를 득한 자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라도 별도의 인공수정소 사업장을 갖추지 않을 시 인공수정소 개설 신고 수리를 거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국민신문고('24.10.31 접수)를 통해 진주시에 거주하는 민원인이 진주시에 인공수정소 개설을 신청하였으나, 개설 장소가 개인주택으로 인공수정소를 설치하기에는 건축법(건축물의 용도¹⁹⁾)에 적합하지 않음을 들어 신청을 반려함.

이에 따라 명확하지 않은 규정으로 인해 지자체별 해석의 차이가 발생하는 등 불합리한 인공수정소 개설 요건을 시정할 필요가 있어 보임(붙임 참고자료 참조).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가축인공수정소 현황 조사결과(‘24.

19) 건축법 시행령(제3조의5)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별표1)에 따르면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동물위탁관리업 등 주택가와 인접한 주민생활 편의 시설은 ‘제1종 및 제2종근린시설’로 분류

10월 기준), 영업 중인 2,458개소 중 고정 사업장을 보유한 인공수정소는 1,217개소(49.5%) 이고,

별도의 고정 사업장 없이 개설신고를 한 인공수정소는 1,241개소(50.5%)로, 이미 많은 수의 인공수정소가 고정 사업장 없이 자동차만을 활용하여 영업을 영위하고 있음.

【 개설신고된 인공수정소 중 고정 사업장 보유 현황 】

인공수정소 (총 2,458개소)	
고정 사업장 보유 인공수정소	고정 사업장 미보유 인공수정소
1,217개소(49.5%)	1,241개소(50.5%)

이는 인공수정 행위가 축산농가에 방문하여 시행되므로, 인공수정소 개설 신고 접수 시 “고정 사업장”을 인공수정소 영업을 위한 필수적 요건으로 보지 않고, 자동차를 “이동식 인공수정소”로 판단하여 신고를 수리한 결과로 보임.

이와 같이 현행법 제17조제1항의 “인공수정소”에 대한 해석에 따라 인공수정소 개설신고 수리 여부 또한 달라지는 등 현장에서의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인공수정소의 범위에 고정 사업장 뿐만 아니라, 자동차 등 이동수단을 포함하도록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상 인공수정소에 대한 혼란을 방지한다는 측면에서 필요한 입법조치

로 보임.

다만, 안 제17조제1항에서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 그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과 관련하여 이동수단의 범위가 다양하므로, “자동차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이동수단”으로 위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임.²⁰⁾

20) 한편, 현행법 제17조제1항에서 수정소를 개설하려는 자는 그에 필요한 시설 및 인력을 갖추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수정소의 시설 및 인력에 관한 기준과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상기 수정소 시설 기준에 대하여 위임받은 동법 시행규칙 제22조제2항제2호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의 검사·주입 및 보관에 필요한 기구와 설비명세서”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 어떤 기구가 필요한지에 대하여 이해관계자 등 국민이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농림축산식품부는 현행법 제17조제1항에서 위임하고 있는 수정소 개설에 필요한 시설을 동법 시행규칙에 조속히 구체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6.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 인증제도 폐지를 위한 관련 조문 삭제
(안 제21조 삭제)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제도 폐지를 위해 관련 조문인 현행법 제21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	<삭 제>

현행	개정안
<u>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u> <u>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u> <u>2.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u> <u>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u>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제도는 수요와 실효성이 낮아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2) 국가기술표준원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제도는 해외 유사제도가 부재하고, 인증 수요가 낮으며, 가축검정과 같은 유사 제도를 통해 대체가 가능하므로 폐지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3)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한돈·양계·오리 등 9개 단체

별도 의견 없음.

다. 검토 의견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제도는 검정을 통해 우수 종축을 선발하고,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우수하고 품질 좋은 정액등을 농가에 보급하여 가축을 개량하려는 목적으로 현행법²¹⁾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따라 2008년 5월부터 종축²²⁾업체(종돈·종계), 정액등처리업체²³⁾(소·돼지)를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음.

21) 「축산법」

제21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정액등처리업과 종축업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이고 가축을 개량하기 위하여 우수업체를 인증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우수업체를 인증할 인증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항에 따른 인증기관에 신청하여야 한다.

④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체 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우수업체 인증의 기준·절차 및 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축산법 시행규칙」

제26조(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기관 지정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우수 종축업체(이하 “우수업체”라 한다)를 인증하게 하기 위하여 농촌진흥청 국립축산과학원(이하 “국립축산과학원”이라 한다)을 인증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우수업체로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액등처리업허가증 사본 또는 종축업허가증 사본

2.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가축의 외모 및 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

3.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젖소의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발급한 서류(젖소에 한한다)

4. 가축개량기관 또는 종축검정기관이 돼지의 스트레스증후군 유전자를 검사하고 발급한 서류(돼지에 한한다)

5. 해당 정액등처리업체 또는 종축업체가 별표 3 제2호, 별표 3의2 제1호나목 또는 제2호나목의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관할 시·도가축방역기관이 발행한 서류로 한정한다)

③ 법 제21조제5항에 따른 우수업체의 인증기준은 별표 3 및 별표 3의2와 같다.

④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신청이 별표 3 또는 별표 3의2의 인증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신청인에게 별지 제15호서식의 우수업체인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⑤ 국립축산과학원의 장은 우수업체의 인증을 받은 업체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2)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종축”이란 가축개량 및 번식에 활용되는 가축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가축을 말한다.

【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개요 】

구분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제도목적	□검정을 통해 우수 종축을 선발하고, 업체의 위생관리 수준을 높여 우수하고 품질 좋은 정액등을 농가에 보급하여 가축을 개량하고자 함
실시근거	□(법령) 축산법 제21조 및 시행규칙 제26조 □(고시) 우수 종축업체 인증에 관한 고시, 우수 종축업체 인증업무 처리지침
인증대상	□종축업체(종돈·종계), 정액등처리업체(소·돼지)
운영기관	□국립축산과학원
주요기준	□(우수종축업) 사육규모, 종축등록두수, 질병발생현황, 인력·시설보유 등 □(우수정액등처리업) 우수종축 보유현황, 질병발생현황, 인력·시설 보유, 정액관련검사 등
실적	□총 누적 51개소(종돈장 20개소, 종계장 5개소, 정액등처리업(돼지) 26개소)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제출(2024. 11. 26.)

【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 현황 】

구 분		'17	'18	'19	'20	'21	'22	'23	평균
우수정액처리 업체(돼지)	현황	19	19	22	25	27	27	27	23.7
	신규	-	3	3	2	-	-	-	1.1
	취소	-	-	-	-	-	-	-	-
우수 종축 업체	종돈장	현황	14	14	17	17	18	20	17.1
		신규	2	3	-	1	2	-	1.1
		취소	2	-	-	-	-	-	0.3
	종계장	현황	5	5	5	5	5	4	5.1
		신규	-	-	-	-	-	-	-
		취소	-	-	-	1	-	-	0.1
계	현황	38	38	44	47	50	51	51	45.6
	신규	2	6	3	3	2	-	-	2.3
	취소	2	-	-	-	-	-	-	0.3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제출(2024. 11. 26.)

* 제도 운영 이후 정액등처리업체(소)는 인증실적이 없음

** '22년도부터 현재까지 추가 인증업체 없음

23) 축산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7. “정액등처리업”이란 종축에서 정액·난자 또는 수정란을 채취·처리하여 판매하는 업을 말한다.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및 종축업체 인증과 관련하여 연도별 신규 인증현황을 살펴보면,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인증의 경우 최근 7년간('17~'23) 소에 대하여는 단 한건의 인증도 없는 실정이고, 돼지의 경우에도 같은 기간 연평균 1.1건에 불과함.

또한, 우수 종축업체 인증도 최근 7년간('17~'23) 동 인증을 취득한 '종계장'이 전무할 뿐만 아니라, '종돈장' 역시 인증 취득 건수가 연평균 1.1건에 불과하여 동 인증제도의 수요 및 실효성이 저조한 것으로 보임.

이에 개정안은 우수 정액등처리업체 등의 인증제도를 폐지하기 위하여 현행법 제21조를 삭제하려는 것임.

① 동 인증제도의 수요 및 실효성이 극히 저조하여 이미 사문화된 제도인 점,

② 우수 종축 선발에 따른 가축의 개량이라는 동 인증제도의 목적인 가축검정제도 및 정액 품질확인²⁴⁾을 통해 대체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향후 관리 수준이 높고 개량 노력이 인정되는 농장은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개량 지원사업을 통해 지속적·적극적으로 지원할

24) 정액등처리업체는 6개월마다 보유 종축에 대해 질병(결핵, 브루셀라 등 전염성질환, 구개열 등 유전성 질환) 검사 및 정액의 품질(생존율, 기형률, 유효정자수 등) 검사를 하여야함(축산법 시행규칙 별표3의3 축산업허가자 등의 준수사항)

수 있도록 관련 사업지침을 개선할 예정이라는 점,

④ '22년 국가기술표준원이 실시한 「적합성 평가제도 실효성 종합검토서」²⁵⁾ 및 '24년 국정현안 관계장관 회의에서 규제혁신추진단(국무조정실)이 상정한 「인증규제 정비방안」²⁶⁾에서도 동 인증제도에 대하여 인증실적 저조 등의 사유로 폐지를 의결한 바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개정안과 같이 동 인증제도를 폐지하더라도 그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보임.

25) 적합성평가제도가 부처의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바람직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필요성·적절성·완성도 측면에서 분석·검토하는 것(「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26) 257개 인증규제를 검토하여 폐지 24, 통합 8, 개선 66 등 정비방안을 제시

7. 보고 및 검사 등 근거 신설(안 제49조의2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현행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등에 대하여 ①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자료 제출, ② 사업장 등 출입 및 검사 등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신설>	제49조의2(보고·검사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그 시설 또는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장·사무소 또는 축사 등에 출입하여 장부, 서류, 축산시설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2.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의

현행	개정안
	<u>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u> 3.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4.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② 제1항에 따라 출입·검사 또는 질문을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의 등록·검정기관, 토종가축 인정기관 및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해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함.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한돈·양계·오리 등 9개 단체
별도 의견 없음.

다. 검토 의견

현행법 제42조제1항²⁷⁾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급판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도매시장법인 등²⁸⁾에게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음.

현행법 제42조의10 제1항²⁹⁾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 등을 하도록 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검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행법상 이와 같은 검사 또는 자료 제출 등에 대한 법적 근거가 상기 ① 등급판정 업무, ② 인증품에 대한 조사에 국한하여 규정되어 있음.

27) 「축산법」

제42조(도매시장법인 등에 대한 감독)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등급판정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매시장법인 또는 공판장의 개설자 및 도축장의 경영자에게 시설의 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해당 시설과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28) 축산물 거래지역 안에서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22조에 따른 농수산물 도매시장의 축산부류 도매시장(인천 삼성식품, 광주 삼호축산, 경기 안양 협신식품, 충남 홍성 홍성공판장, 경남 창원 해드림공판장)

29) 「축산법」

제42조의10(인증품 및 인증사업자의 사후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 또는 인증기관으로 하여금 매년 다음 각 호의 조사(인증기관은 인증을 한 인증사업자에 대한 제2호의 조사에 한정한다)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사 대상자로부터 시료를 무상으로 제공받아 검사하거나 조사 대상자에게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1. 판매·유통 중인 인증품에 대한 조사

2. 인증사업자의 사업장에서 인증품의 생산 또는 취급 과정이 제42조의2제3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맞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

개정안은 효율적인 법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가축의 등록·검정기관, 토종가축 인정기관 및 축산업 허가자 등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나 자료제출 요구, 검사 등을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검사·자료제출 대상에 대한 현행법 및 개정안 비교 】

현행법	개정안	
① 등급판정 업무	① 등급판정 업무	③ 제6조제1항에 따라 가축의 등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④ 제7조의2제1항에 따라 가축의 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② 인증품에 대한 조사	② 인증품에 대한 조사	⑤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인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
		⑥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원활한 법 집행을 통한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여러 법률에서 소관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관련 사항에 대하여 “보고 및 검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규정하고 있고,

안 제7조의2(검정기관의 지정 등) 및 안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 신설에 따른 검정·인정 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현행법상 “보고 및 검사”와 관련한 입법 미비를 개선하려는 것으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유사 입법례를 살펴볼 때, 개정안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안 제49조의2제1항을 보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현행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등에게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안 제49조의2제1항에 따르면, 보고 및 검사 대상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라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등이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고·자료제출·검사 등을 할 수 있는바, 보고 및 검사 요건을 다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와 관련하여 유사 입법례를 살펴보면, 보고와 검사의 경우 그 대상인 국민의 권리를 상당 부분 제약하는 측면이 있어 소관부처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고 및 검사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한정하고 있음.

【 유사 입법례 】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2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21조제3항에 따른 감독을 위하여 대중교통운영자에게 보조금 또는 용자금의 사용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제출을 명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제82조(검사·보고 등)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에 관한 정책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의 설비상황·장부 또는 서류 등을 검사하거나 전기통신설비를 설치한 자에 대하여 설비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37조(보고 및 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제40조에 따른 수산자원보호구역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말한다), 시·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나 도시·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에게 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개발행위에 관한 업무 상황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내용에 대한 이행 여부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가.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내용 나.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인가의 내용 2. 제133조제1항제5호, 제5호의2, 제6호, 제7호, 제7호의2, 제15호, 제15호의2, 제15호의3 및 제16호부터 제22호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그 밖에 해당 개발행위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관련 자료 및 현장 확인이 필요한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79조(보고·검사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그 사업에 관한 사항이나 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거나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다.
1. 이 법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거나 민원 등이 발생한 경우 2. 이 법에 따른 허가·신고·인가 또는 승인 등의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제23조, 제33조, 제44조, 제49조의7, 제49조의14에 따른 개선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제51조제2항에 따라 보조 또는 용자를 받은 자가 그 자금을 적정하게 사용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5. 제51조의2와 제51조의3에 따른 유가보조금과 천연가스 연료보조금의 지급과 관련하여 확인이 필요한 경우 6. 제78조에 따른 협의·조정 시 적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교통사고 대응 및 예방 또는 이용자의 교통안전에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련 정책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1조(보고와 검사) ①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u>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운수사업자나 화물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사용자에 대하여 그 사업 및 운임에 관한 사항이나 그 화물자동차의 소유 또는 사용에 관하여 보고하게 하거나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소속 공무원에게 운수사업자의 사업장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거나 관계인에게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u> 1. 제3조제7항, 제24조제6항 또는 제29조제3항에 따른 허가기준에 맞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화물운송질서 등의 문란행위를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3. 운수사업자의 위법행위 확인 및 운수사업자에 대한 허가취소 등 행정 처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따라서, 안 제49조의2제1항의 보고 및 검사 요건을 유사 입법례와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한정하여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가 제약되는 측면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8. 안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시 청문 규정 신설
(안 제50조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안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 안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 및 현행법 제33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시 청문을 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0조(청문) <신설>	제50조(청문)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검정기관의 지정 취소 2.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인정기관의 지정 취소 3. 제33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②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제14조에 따른 수정사의 면허취소 2. 제25조제1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취소 3. 제25조제2항에 따른 가축사육업의 등록취소 4. 제34조의4에 따른 가축거래상인의 등록취소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은 가축 검정기관 및 토종가축 인정기관에 대해 청문의 대상이 되는 처분(지정취소)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처분을 하려는 경우 청문을 실시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함.

또한, 현행법 제33조의3에서도 교육기관 등의 지정 취소에 관한 근거가 규정되어 있으므로, 해당 규정도 포함하여 청문 규정 신설이 필요함.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한돈·양계·오리 등 9개 단체

별도 의견 없음.

다. 검토 의견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에 앞서 당사자 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³⁰⁾로, 행정청이 각종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 등에게 의견 개진과 자료 제출의 기회를 부여하는 행정과정임.³¹⁾

개정안은 안 제7조의2제2항의 검정기관 및 안 제9조의3제2항의 인정기관 신설에 따라, 해당 검정·인정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하는 한편,

30) 「행정절차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청문”이란 행정청이 어떠한 처분을 하기 전에 당사자등의 의견을 직접 듣고 증거를 조사하는 절차를 말한다.

31) 법제기준과 실제(국회 법제실 2024, p711)

현행법상 동법 제33조의3제5항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 취소 시 이에 대한 청문 규정이 부재함에 따라, 상기 교육기관 지정취소 시 청문을 거치도록 하여 입법 미비를 개선하려는 것임.

동 법에 따라 지정된 검정기관 등의 지정 취소 시 이에 대한 청문을 거치도록 규정함으로써 위법한 행정결정을 사전에 방지하고, 국민이 행정참여를 도모하여 행정의 민주성·공정성·투명성·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다만, 유사 입법례를 살펴볼 때,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첫째, 안 제9조의3(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 등)에 따른 토종가축 인정기관이 안 제9조의2(토종가축의 인정 등)에 따라 토종가축의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할 경우 이에 대한 의견제출을 할 수 있도록 추가로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둘째, 상기 의견제출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사 입법례처럼 「행정절차법」 관련 조문을 준용³²⁾하는 것을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32) 「행정절차법」

제22조(의견청취)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1조제4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사자가 의견진술의 기회를 포기한다는 뜻을 명백히 표시한 경우에는 의견청취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행정청은 처분 후 1년 이내에 당사자등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위하여 제출받은 서류나 그 밖의 물건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7조(의견제출) ① 당사자등은 처분 전에 그 처분의 관할 행정청에 서면이나 말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제출을 할 수 있다.

② 당사자등은 제1항에 따라 의견제출을 하는 경우 그 주장을 입증하기 위한 증거자료 등을 첨부할 수 있다.

③ 행정청은 당사자등이 말로 의견제출을 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그 진술의 요지와 진술자를 기록하여야 한다.

④ 당사자등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의견제출기한까지 의견제출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 유사 입법례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114조(청문 등) ④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8조제1항에 따라 <u>우수관리인증을 취소하려면 우수관리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u> ⑤ 우수관리인증기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u>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우수관리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u> ⑥ 품질인증기관은 제16조에 따라 <u>품질인증의 취소를 하려면 품질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u> ⑦ 제4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관리인증기관" 또는 "품질인증기관"으로 본다.
식품산업진흥법
제33조의2(청문 등) ③ 우수식품등인증기관은 제29조에 따라 <u>우수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u>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산업표준화법
제36조(청문 등) ② 인증기관이 제22조제1항에 따라 인증받은자의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u>인증받은자에게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u> ③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는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에 관하여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은 "인증기관"으로 본다.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2조(청문 등) ③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은 제36조에 따라 <u>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취소하려면 그 우수수산식품등인증을 받은 자에게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u> ④ 제3항에 따른 의견 제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2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7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 및 "관할행정청"은 각각 "우수수산식품등인증기관"으로 본다.

9. 과태료 부과 근거 조항 신설(안 제56조제2항제19호 신설)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개정안은 안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를 신설함.

현행	개정안
제56조(과태료) ① (생략)	제5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 ----- -----.
1. ~ 18. (생략)	1. ~ 18. (현행과 같음)
<신설>	19.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 ·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 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③ (생략)	③ (현행과 같음)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가축의 등록·검정기관, 토종가축 인정기관 및 축산업 허가자 등

에 대한 보고·자료제출 요구, 검사 등의 집행에 있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위반시 과태료 부과 기준이 필요함.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한돈·양계·오리 등 9개 단체
별도 의견 없음.

다. 검토 의견

안 제49조의2제1항에서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현행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등에게 보고·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출입·검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안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한 자 또는 출입·검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안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요구 시 보고·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자료제출을 할 수 있고, 같은 항에 따른 출입·검사 시에도 이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할 수 있는바,

이에 대한 처벌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당 조문의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고, 유사 입법례와의 비교 시에도 적정 수준의 처벌 수준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할 때, 개정안은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 유사 입법례 】

「국민체육진흥법」
제55조(과태료)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2.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 제11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23조를 위반하여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6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5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7. 제45조제1항에 따른 조사 또는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자 또는 보고·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자료를 제출하거나 보고를 한 자 8. 제45조제3항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
「공공주택 특별법」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제9조제6항에 따른 서류 등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해당 기관 또는 업체의 출입·조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 자

10. 부칙

가. 개정안의 내용과 취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도록 부칙에서 개정안의 시행일을 규정함.

개 정 안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 관계기관 의견

1) 농림축산식품부

개정안의 시행 전 국민이 주지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고, 하위법령의 입법 소요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시행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동의함.

2) 축산관련단체협의회, 한우·한돈·양계·오리 등 9개 단체

별도 의견 없음.

다. 검토 의견

개정안의 부칙에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개정안이 시행 되도록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안 제7조의2의 가축 검정기관의 지정·안 제9조의2 토종 가축의 인정 및 안 제9조의3 토종가축 인정기관의 지정은 현행법 및 동법 시행규칙 등에 근거하여 이미 시행되고 있음.

따라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거 규정에 따라 검정·인정기관 지정 또는 토종가축 인정을 받은 자는 개정규정에 따른 검정·인정기관 지정 또는 토종가축 인정을 받은 것으로 본다는 각각의 경과조치를 추가로 규정함으로써 법 해석상 현장의 혼란을 방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또한, 안 제21조 삭제에 따라 폐지되는 우수정액처리업체등 인증 및 인증기관의 유효기간은 이 법 시행일로 종료한다고 부칙에 규정하여 기존 우수정액처리업체등 인증 및 인증기관의 효력이 상실 되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참고자료

가축인공수정소 관련 민원

○ 국민신문고 민원제기 내용(신청번호 1AA-2410-1118456)

본인은 진주의 농가주택(배우자명의)에 거주하며 최근 가축인공수정사 면허발급하여 진주시 농업기술센터에 수정소 개설신청 하였으나 사업장 개설장소(배우자명의 농가주택)가 1,2종 근린생활시설이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되었습니다 수정소개설을 위해서는 1,2종 근린생활시설에 임차를 해야만 한다고 하여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수정사의 업무는 축사에서만 일어나기에 사업장은 무의미 합니다 이런 실정에 또 비용을 들여 근린생활시설에 임차를 한다는 것은 부담만 가중될 뿐입니다 정부의 농가소득 증대와 실업자 해소 정책에도 맞지 않는것 같습니다 담당공무원은 업무를 매뉴얼에 따라 처리함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시,군 마다 규정 해석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겠기에 명확한 지침과 불합리한 개설 요건의 시정을 기대합니다

○ 국민신문고 답변 내용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신청번호 1AA-2410-1118456)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민원의 내용은 “가축인공수정소 개설 시 고정된 사업장 불필요”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는 다음과 같습니다.

「축산법」 제17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는 가축인공수정소 개설 신고 시 건축물의 용도에 따라 수정소 개설을 제한하는 사항은 없지만, 가축인공수정소가 고정된 사업장인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를 확인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가축인공수정소의 경우 인공수정사가 주로 출장하여 영업하는 특성상 고정된 사업장 없이 영업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여 「축산법」상 가축인공수정소의 정의를 자동차 등 이동 수단을 활용하는 경우도 포함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현재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 조회중)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신소연 사무관(☎044-201-2342)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관 축산정책과 제출(2024. 11. 26.)